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4
------	-----

2003년 3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건설국장·시정기획관)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일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 당연직 비상임이사중 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안 제9조제2항)
 - 건설국장·시정기획관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
-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22조제1항)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포함된 “건설국장과 시정기획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협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건설국장과 시정기획관”的 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경비 차원에서 당연한 사항이나, 이를 변경하면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나친 포괄적인 위임으로 생각함.
- 따라서, 최소한 “공단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결산기일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으므로 결산기일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의원 14명 전원일치 의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 ②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5
------	-----

2003년 3월 2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나 현재의 하수도 사용요금은 하수
도 총괄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시의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아 계속
적인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요금을 상향조정(평균
22%)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조정(안 별표1)

업종 구분	사용구분(m ³)	사 용 요 금	
		m ³ 당 단가(원)	조정
가정용	0~30이하	90	120
	30초과~50이하	240	280
	50초과	400	440